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41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7.

발 의 자 : 김용민 · 조계원 · 노종면
박균택 · 장경태 · 임미애
민병덕 · 서영석 · 추미애
정진욱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법관이 해당 형사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재판 수행에 의문을 야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척·기피·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성폭력,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이 그와 동종 또는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, 재판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.

이에 「국가공무원법」에 따른 성비위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·유사한 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,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법관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성

비위로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, 그 처분의
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·유사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함
(안 제17조제2항 신설).

나.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에 대하여 사건 당사자가 기피를
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8조).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법관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(이하 “징계등”이라 한다)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징계등 사건과 동종·유사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.

제18조제1항제1호 중 “法官이 前條 各 號의 事由에 該當되는”을 “법관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법관의 직무집행 제척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사유로 징계등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第17條(除斥의 原因) (생략) <신설>	第17條(除斥의 原因) ① (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법관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(이하 “징계등”이라 한다)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징계등 사건과 동종·유사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.
第18條(忌避의 原因과 申請權者) ① 檢事 또는 被告人은 다음 境遇에 法官의 忌避를 申請할 수 있다. 1. <u>法官이 前條 各 號의 事由에 該當되는 때</u> 2. (생략) ② (생략)	第18條(忌避의 原因과 申請權者) ① ----- ----- -----. 1. 법관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--- 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